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윤호중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노후 함정을 대체하여 도입되는 중형함정 등 신규 함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(경사 3명, 경장 1명)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정보외사국 1개 과,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방해양경찰청 5개과, 해양경찰서 1개과 및 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, 강릉해양경찰서 경과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, 해양경찰청 등과 합의되었음
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- 2) 입법예고(2025. 8. 29. ~ 9. 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5 중 총 계 “12,656”을 “12,660”으로, 경찰공무원 계 “11,458”을 “11,462”로, 총경 이하 “11,449”를 “11,453”으로, 3급 또는 4급 이하 “1,186”을 “1,183”으로, 전문경력관 “12”를 “15”로 한다.

별표 5의2를 삭제한다.

별표 6 제1호 및 제2호 가항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5]

해양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(제36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12,656</u>	<u>12,660</u>	+4
경찰공무원 계	<u>11,458</u>	<u>11,462</u>	+4
·	·	·	
·	·	·	
총경 이하	<u>11,449</u>	<u>11,453</u>	+4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<u>1,186</u>	<u>1,183</u>	-3
전문경력관	<u>12</u>	<u>15</u>	+3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86